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0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10년 7월 6일

3. 제안이유

교육청 또는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발급 가능한 교육관련 민원서류에 대하여 온라인민원 이용 활성화와 대국민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수수료 무료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1) 띄어쓰기

- 항 번호(①, ②) 다음에는 한 칸 띄고 본문을 씀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각V조, 각V항, 각V호, 각V목

2) 용어정비 등

- 의한, 의하여, 의한다 → 따른, 따라, 따른다

-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조에 따라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안 제5조제5항을 신설하여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 등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증명 수수료 감면에 따른 세입재원의 손실액은 연간 어느 정도 인지?
- 도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어떤 종류가 있는 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